"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"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—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
금융개혁 —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

보 도 자 료

보도	2016. 5. 16.(월) 조간	배포	2016. 5. 13.(금)

담당부서	금융혁신국 연금금융실	권오상 실장(3145-5180), 김금태 팀장 (3145-5199)

제목 :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손해가 큽니다.

「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」 과제 ② 장기금융상품 가입자 권익보호

- 중도해지시 **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**에 대해 **기타소득세**(16.5%)가 **과세**되고 '13.3월 이전 계약은 5년이내 해지시 **가산세**도 **부과**됨
- **금융회사는 연금저축 판매시 중도해지시 세제사항**에 대해 **충분히 설명**하고, **가입후에도 세제사항**(변경사항 포함)을 **안내**할 예정

1 배 경

□ **금융소비자**는 **노후준비자금 마련** 및 **연말정산시 세제혜택**(세액공제)을 받고자 **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***을 가입하고 있음

* 은행, 증권,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·펀드·보험으로 **납입금액 400만원**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(연금저축 계좌수 : 6.8백만, 적립금액 : 109조원, '15.12월기준)

□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**중도해지시 세금부담**은 **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**가 있음

* '15년중 연금저축 중도해지건수 33.6만건, 해지환급금 2조 5,571억원

○ 법원판례에 의하면 **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**은 금융회사의 **설명의무대상이 아니므로** 가입자가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함

➡ 금융소비자는 **중도해지시 세금부과**에 따른 **손실금액**을 확인하여 **예상하지 못한 불이익**이 **발생하지 않도록 유의**할 **필요**

2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제

1 **(기타소득세 납부)** 연금저축을 중도해지시 **과세대상금액(소득·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+ 운용수익)**에 대해 **기타소득세**(16.5%) **부과**

○ 다만, 가입자 사망, 해외이주 등 **불가피하게 해지**하는 경우(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해지신청건에 한함) **연금소득세율**(3.3%~5.5%) **적용**

※ 참고로 '14년도까지는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했으나 **'15년부터** 세법개정을 통해 **기타소득세만 납부**

2 **(해지가산세 납부) '13.3월 이전*에 가입한 연금저축**에 대해서는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**해지가산세** 부과

○ **과세대상금액(소득·세액공제를 받은 금액)**에 대해 해지가산세율(2.2%) 적용

* '13.3월 이후 체결한 연금저축은 세법개정을 통해 해지가산세 부과 폐지

<참고>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

▶ **연간 연금소득액**(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 제외)이 **1,200만원 이하**인 경우 **가입자의 연령**에 따라 **과세대상금액***에 **연금소득세율**** **차등 적용**

* 소득·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+ 운용수익
** 55~69세(5.5%), 70~79세(4.4%), 80세 이상(3.3%)

▶ **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**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(3.3%~5.5%)이 아닌 **기타소득세율**(16.5%) **적용**

연금저축 중도해지 관련 세제

주요세제	종 전	현 행	시행
▸ **기타소득세 (소급 적용)**	기타소득세**(22.0%)** 부과 (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과세)	기타소득세**(16.5%)** 부과 (기타소득 분리과세)	'15년
▸ **해지가산세**	가입후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(2.2%) 부과	'13.3월 이전 가입분 계속 적용 '13.3월 이후 가입분부터 폐지	'13년

중도해지시와 연금수령시 세금 비교

사 례	▸ 2012년 연금저축 가입,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 납입(5년 유지) ▸ 매년 400만원씩 세제혜택 받음(총 2,000만원) ▸ 현재 적립금은 2,125만원(납입금액 2,000만원, 운용수익 125만원)
중도 해지시	**<기타소득세> : 350.6만원** ▸ 과세대상금액 : 세제혜택금액 + 운용수익 = 2,125만원 ▸ 기타소득세액 : 2,125만원 × 16.5% = 350.6만원
연금 수령시	**<연금소득세> : 117만원** ▸ 과세대상금액 : 세제혜택금액 + 운용수익 = 2,125만원 ▸ 총연금소득세 : 11.7만원* × 10년 = 117만원 * 매년 연금소득세(11.7만원 = 212.5만원 × 5.5%) - 과세대상금액 2,125만원을 10년 균등수령하면 매년 212.5만원 산정 - 55세~69세 기간중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인 5.5% 적용
비교 결과	**▸ 중도해지시 연금수령시 대비 233.6만원 수령액 감소** **▸ 중도해지시 납입원금 대비 기회비용손실 11.7% ↓ 발생** * 중도해지 후 또는 연금수령기간 동안 발생할 운용수익은 고려하지 않음

중도해지와 연금수령시 비교(요약)

구 분	중도해지시	연금수령시	차액
납입금액	2,000만원	2,000만원	-
세금액	350.6만원	117만원	233.6만원
실수령액	1,774.4만원*	2,008만원	〃

* 중도해지시 실수령액이 납입금액보다 적음(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고려하지 않음)

3 향후계획

1 **(세제안내 강화)** 금융회사는 **연금저축상품 판매시**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**중도해지시 과세**에 대해서도 충분히 **설명하고,**

○ **연금저축 가입후**에는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수익률 보고서 등 **통지서**에 **연금관련 세제사항**을 **종합 안내**하도록 함

2 **(세제안내 채널 개발) 통합연금포털***에 **연금세제 안내 페이지**를 **신설**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연금세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,

○ **연금저축 길라잡이**** 개편·발행시 **연금세제**에 대한 **설명**을 **강화**하는 등 **세제안내 채널**을 **지속적**으로 **개발**

*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연금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(http://100lifeplan.fss.or.kr/)

** 국민 스스로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가 발간한 책자

4 소비자 유의사항

□ 금융소비자는 연금저축 **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불이익**을 **정확히 인식**하고 **연금저축 상품**을 **가입**하여야 함

□ 가입자는 **장기간동안 부담가능한 연간 납입금액**을 불입하여 **연금개시 시기**(최소 55세)까지 **연금저축계약**을 **유지**할 필요

□ 가입자의 경제사정으로 **연금저축 납입**이 **곤란한 경우 납입중지**(신탁·펀드) 또는 **납입유예***(보험)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음

* '14.4월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가능하며 1회 12개월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허용

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.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1 연금저축 세액공제·중도해지·연금수령 등 예시

1. 세액공제시 공제세액 예시

사 례	1년간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은?
설 명	▸ **공제 대상금액** : 400만원(연간한도 : 400만원) ▸ **공제세율** - 종합소득이 4,000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그 금액이 5,500만원 초과인 경우 : 13.2% - 종합소득이 4,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그 금액이 5,500만원 이하인 경우 : 16.5%
	▸ **공제세액** - 공제세율이 13.2%인 경우 : 400만원 × 13.2% = 52.8만원 - 공제세율이 16.5%인 경우 : 400만원 × 16.5% = 66만원

2. 중도해지시 실수령금액 예시

사 례	**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?** ▸ 2012년 연금저축 가입, 2015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 ▸ 매년 400만원씩 세액(소득)공제를 받음(총 1,600만원) ▸ 현재 적립금은 1,700만원(납입금액 1,600만원, 운용수익 100만원)
설 명	▸ **기타소득세** - 대상금액 : 세액공제금액 + 운용수익 = 1,700만원 - 기타소득세율 : 16.5%(분리과세) - 기타소득세액 : 1,700만원 × 16.5% = **280.5만원**
	▸ **해지가산세('13.3월 이전에 가입하여 5년이내 해지하기 때문)** - 대상금액 : 1,600만원(납입금액 합산, 연간 400만원 한도) - 해지가산세율 : 2.2% - 해지가산세액 : 1,600만원 × 2.2% = **35.2만원**
	▸ **실수령액** - 2,100만원(납입원금+운용수익) - 280.5만원(기타소득세 금액) - 35.2만원(해지가산세 금액) = **1,384.3만원** ※ 해지환급금, 운용 수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

3. 연금수령 예시

사 례

연금수령시 납부할 세금과 실수령금액은?

- 연금 납입액 2,000만원(납입액 전부 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를 받음)
- 운용수익 125만원, 2016년부터 10년간 균등한 금액으로 연금수령 (2016년이 만 55세이면서 가입후 5년이 지난 시점으로 가정)

설 명

- **연금소득세**
  - 과세대상금액 : 2,125만원
  - 연금소득세율 : 5.5%(만 70세 미만은 연금소득세율 5.5%)

- **실수령금액**
  - 연령별 평가금액에 연금수령연차를 고려한 연간수령한도를 계산하고, 해당 금액에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

(단위 : 만원)

연령	평가금액	연금 수령연차	연간 수령금액	연금 소득세	실수령 금액
-	(A)	(B)	(C)	(D)	(E)
55세	2,125.0	1	212.5	11.7	200.8
56세	1,912.5	2	212.5	11.7	200.8
57세	1,700.0	3	212.5	11.7	200.8
58세	1,487.5	4	212.5	11.7	200.8
59세	1,275.0	5	212.5	11.7	200.8
60세	1,062.5	6	212.5	11.7	200.8
61세	850.0	7	212.5	11.7	200.8
62세	637.5	8	212.5	11.7	200.8
63세	425.0	9	212.5	11.7	200.8
64세	212.5	10	212.5	11.7	200.8
합 계			**2,125**	**117**	**2,008**

※ 천원단위 미만 절사

- (A) : 연금 개시후 운용수익은 없다고 가정
- (B) : 가입후 5년 이상 및 만55세가 되는 시점이 1년차
- (C) : 연간수령한도(255만원) 이내에서 10년간 균등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
- (D) : (C) * 5.5%
- (E) : (C) - (D)

4. 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 전환 예시

사 례	**세액공제한도를 초과납입시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은?** ‣ 2014년도 5월 이후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납입 ‣ 2014년도 연말정산시 4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음
설 명	‣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300만원에 대하여 2015년에 납입한 것으로 전환신청을 하게 되면, 금융회사는 2015년에 30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전환 처리(증명서 발급) ※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창구에 제출해야 함 ※ 여러 금융회사에 복수의 연금저축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 이외에 각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연금납입확인서도 제출 필요 ‣ 이후 2015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(소속회사)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(당해연도 납입액 합산 400만원 한도)

붙임2 연금세제 안내미흡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

□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과소지급으로 인한 불만

"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과세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. 금융회사에서 중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은거 아닌가요?"

□ 중도해지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미안내로 인한 피해

"연금상품을 해지했는데 300만원보다 많이 수령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받지 못했습니다. 얼마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통보 받아, 저는 억울하게 가산세를 냈습니다."

※ 소득세법 개정으로 동 소비자 불만은 해소되었음

□ 연금수령시 비과세되는 것으로 오인

"연금 개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. 가입 당시에는 세금이 부가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 억울합니다."

□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세액공제 받지 못한 손해

"전년도에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는데 올해는 300만원만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. 전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100만원을 올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."

참고1 현행 연금저축세제 주요내용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세제내용</th></tr>
<tr><td>납입한도</td><td>- 연간 1,800만원까지 납입 가능(퇴직연금 개인부담액 포함)</td></tr>
<tr><td>세제혜택</td><td>- 연간 최대 400만원 이내 납입액의 13.2%를 세액공제
※ 종합소득이 4,0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,500만원 이하)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6.5%를 세액공제</td></tr>
<tr><td>연간연금
수령한도</td><td>$\frac{\text{연금계좌의 평가액}}{\text{(11-연금수령연차)}}$ × 120% (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12%)
※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가입 5년 이상이 경과되고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1년차임
※ '13.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6년차부터 시작(1차년도 수령한도는 평가액의 24%)</td></tr>
<tr><td>연금수령시
과세</td><td>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연령(연금수령일 기준)</th><th>연금소득세율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확정형</td><td>55세～69세</td><td>5.5%</td></tr><tr><td>70세～79세</td><td>4.4%</td></tr><tr><td>80세～</td><td>3.3%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종신형</td><td>55세～79세</td><td>4.4%</td></tr><tr><td>80세～</td><td>3.3%</td></tr></table>※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수령액이 연간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(공적연금 제외)</td></tr>
<tr><td>중도해지
또는
일시금으로
연금수령시</td><td>- 과세대상금액*에 기타소득세(16.5%) 분리과세
*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+ 운용수익</td></tr>
<tr><td>특별
중도해지</td><td>- 사유 : ① 천재지변, ② 가입자의 사망, ③ 가입자의 개인회생/파산선고, ④ 가입자의 해외이주, ⑤ 가입자 및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, ⑥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파산(사유확인(발생)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- 과세 : 연금수령시 과세와 동일(3.3~5.5%)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>-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은 당해연도 납부금액으로 전환 가능</td></tr>
</table>

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.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2 舊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 및 신연금저축 비교

구 분	舊개인연금저축	연금저축	신연금저축
판매 기간	'94.6. ~ '00.12.	'01.1. ~ '13.2.	'13.3. ~ 현재
납입 한도	분기별 300만원 (연 1,200만원)	분기별 300만원 (연 1,200만원) ⇩('13.3월부터) 연 1,800만원	연 1,800만원
소득(세액) 공제혜택	**연간 납입액의 40%, 72만원 한도** (소득공제)	**400만원**(소득공제) '01~'05년: 240만원 '06~'10년: 300만원 '11~'13년: 400만원 ⇩('14년부터) **세액공제**(13.2%[주1])	**400만원**(소득공제) ⇩('14년부터) **세액공제**(13.2%[주1])
중도해지시 과 세	이자소득세 부과	기타소득세(22.0%) 부과 ⇩('14년부터) 세율 변경 (16.5%)	
가입후 5년내 해지시	해지추징세(4.4%) 부과	해지가산세(2.2%) 부과	-
연금개시기간	적립후 10년경과 및 55세 이후	적립후 5년경과 및 55세 이후	
연금수령한도	5년 이상 분할수령	연금 수령연차별 한도액 설정(10년 기준)	
연금개시 후 과세기준	없음 (이자소득세 비과세)	연금소득세 (5.5%) 600만원 (공적연금 포함) ⇩('13.3월부터)	연금소득세 (3.3%~5.5%)
분리과세 한도	(해지시 이자소득 종합과세)	연금소득세(3.3~5.5%) 연간 1,200만원(공적연금 제외) ☞ 초과시 종합과세	연간 1,200만원 (공적연금 제외) ☞ 초과시 종합과세
근거 법률	**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**	**舊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**	**소득세법 제20조의3**

주1) '15년부터 종합소득 4,0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이면 세액공제율 16.5% 적용
2) 도표상 세율 : 지방소득세(주민세) 포함

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.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3 연금저축 관련 세법 주요 개정이력

시행일자	내 용	관련 조항	비 고
소득세법 ('13.1.1. 시행, 법률 제11611호)	▪ 공적연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분리과세 제외하고, 분리과세 연금소득 금액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,200만원으로 상향 조정	법 제14조 제3항 제9호	'13.1.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	▪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22.0%→16.5%로 인하하여 분리과세	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	
	▪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5.5%에서 나이에 따라 3.3%~5.5%로 인하	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	
소득세법 시행령 ('13.2.15. 시행, 법률 제24356호)	▪ 연간 납입한도를 1천200만원→1천800만원으로 확대	영 제40조의2	'13.1.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	▪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10년→5년으로 단축		
	▪ 55세부터 10년간 연금을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		
	▪ 연금계좌 인출순서 및 과세 제외금액 기준 마련(인출되는 금액의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,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납입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)	영 제40조의3	'13.2.15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소득세법 ('14.1.1. 시행, 법률 제12169호)	▪ 연금저축 납입액의 13.2% 세액공제 실시 (종전 소득공제제도는 폐지)	법 제59조의3	'14.1.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
	▪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6.5%→13.2%로 인하	법 제129조 제1항 제6호	'14.1.1일 이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소득세법 시행령 ('14.2.21. 시행, 법률 제25193호)	▪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인정	영 제40조의2 제3항, 영 제40조의2 제7항부터 제11항	'14.2.2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	▪ 연금수령이 시작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한 연금 납부액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(기존에는 연금 수령액만큼 차감하여 인정)	영 제40조의3 제4항	'14.5.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	▪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	영 제118조의3	'14.5.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

시행일자	내 용	관련 조항	비 고
소득세법 ('15.1.1. 시행, 법률 제12852호)	▪ 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시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(종전에는 연금외수령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)	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·나목	'15.1.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	▪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(종전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)	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	
소득세법 ('15.5.13. 시행, 법률 제13282호)	▪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세액공제율을 16.5%로 상향 조정	법 제59조의3 제1항	'14.1.1일 이후 연금계좌 납입 분부터 적용

※ 도표상 세율은 지방소득세(주민세)를 포함

상기 자료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.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